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7
----------	-----

발의연월일 : 2024. 5. 31.

발 의 자 : 이경숙, 김영실, 이상기,
박윤옥, 박경원, 조성대,
김동훈, 이수련, 한근수,
전혜연, 손정자, 한송연

1. 제안 이유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남양주시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안전도시가 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세부적으로는 지원계획 수립 및 계획의 내용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2. 주요 내용

- 가.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함. (안 제3조)
- 나. 응급장비 설치 대상 및 관리에 대한 조문을 정비함. (안 제5조, 제6조)
- 다.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 4조, 제9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6. 관계법령 : 덧붙임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서 응급 상황”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을 ““자동심장충격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응급의료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중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의무 대상”으로, “시설은”을 “대상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위탁하여 운영하거”를 “운영하는 시설이”로 한다.

1. 설치의무 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47조의2 제1항의 소유자 등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 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9조) 중 “자동심장충격기”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1조)의 제목 “(비밀 준수의 의무)”를 “(비밀 준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삭 제></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남양주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규</u> <u>정함으로써 응급상황</u>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1. “ <u>자동심장충격기</u> ”란 ----- ----- ----- -----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4. “ <u>심정지 환자</u> ”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u><삭 제></u>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생략)

제3조(응급의료 지원 등)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지원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의료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및 관리

제4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
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
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 대상 : 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

2. 설치권장 대상 : 시장이 위탁하
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
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설
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
증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
록 권장할 수 있다.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
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
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
-----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의무 대상 ----
----- 대상
은 -----.

1. 설치의무 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4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2. ----- 운영하
는 시설이-----

<삭 제>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①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비관리 담당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개방된 공공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정책)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 중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 및 관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남양주시 응급의료장비 설치 건물” 현판 설치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47조의2 제1항의 소유자 등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 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
처치교육 요청 시 우선권 부여
및 무료교육 지원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 시장은 심
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등 그에 적합
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
각적인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생략)

제12조 (생략)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

-----.

제9조(비밀 준수) (현행과 같음)

제11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4조(응급의료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 51,200천원(2024년 기준)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관리 : 13,000천원(국50%, 시50%)
 - (신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및 보관함(각 1대 × 4개소 = 9,000천원)
 - (교체) 자동심장충격기 본체(1대 × 2개소 = 4,000천원)
- 교육 및 홍보 : 38,200천원(국29%, 시71%)
 - (교육비) 284천원 × 100회 : 28,400천원
 - (사무관리비) : 9,800천원

※ (참고) 최근 3년 예산 편성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35,689천원	44,800천원	51,200천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관리	17,900천원	8,600천원	13,000천원
교육 및 홍보	17,789천원	36,200천원	38,200천원

○ 제4조제1항제3호 관련

-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은 사업 대상·내용 등 구체적 산출 곤란

⇒ 현행 사업의 예상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이며, 신설 조항(제4조제1항제3호)의 구체적 산출이 불가하여 비용추계가 어려움에 따라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고자 함.

4. 작성자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도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1의2.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 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

는 사람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